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의결 연월일	

제안연월일 : 2011년 3월 3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개정이유

-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를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연구단체에는 연 300만원 이내의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나.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 활동의 종류를 규정함(안 별표 1)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및 등록취소 신청)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등록취소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연구단체 등록부 비치)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변동사항 제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 소속 의원 등의 변동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 활동 계획서)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 활동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연구 활동비 지원) ① 연구 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연구단체에는 연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 활동의 종류 및 지출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

④ 연구 활동비의 지출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지출방법에 따른다.

제7조(연구 활동 결과 보고) 조례 제6제1항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 활동의 종류 및 지출기준
(제6조제3항 관련)

연구활동 종류	지출 가능 항목
공 청 회	○ 인쇄비, 발표자·토론자 사례비 및 식비, 다과비, 그 밖의 행사 준비물 구입비 등
벤 치 마 킹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 등 ○ 강사료, 시설 사용료, 그 밖의 비용 등
자 료 출 판	○ 인쇄비, 자료 수집비, 그 밖의 비용 등
외부인사초청 설 명 회	○ 외부인사초청 강사 사례비, 자료인쇄비, 식비, 그 밖에 설명회 행사 준비 비용 등

1. 공청회 발표자와 외부인사 초청 강사 사례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본급만 지급한다.
2. 벤치마킹 관련 비용의 지급기준은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3. 공청회 토론자 사례비는 1항의 2분의1만 지급한다.
4. 외부인사초청설명회 식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되, 1회 지출한도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 신청서

- 1. 단체명 :
- 2. 등록목적(등록취소 사유) :
 -
 -
- 3. 구성의원

연번	구분 (대표자·단체원)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명	비고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의원연구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1. 단 체 명		
2. 연구활동	가. 종류	
	나. 주제	
	다. 목적	
3. 연구활동 기간		
4.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5. 연구활동비 예산내역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따라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의원연구단체 대표 (서명 또는 인)

부천시의회 의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